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
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 정 식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를 중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,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고용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월보수액을 신고할 경우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중 기한 내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고안·직능 보험료율 상향 시 적용 시기 개선(안 제12조제4항)

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중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,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 적용하도록 함

나. 노무제공자 두루누리 지원 요건 완화(안 제29조의2제2항)

월보수액을 신고할 경우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두루누리 지원 요건 중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요건을 삭제하여

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이 상시근로자수의 증가로 같은 호 각 목의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상시근로자수 증가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「고용보험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.

제29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(단, 제56조의6제3항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)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고용보험료율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2조(고용보험료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이 상시근로자수의 증가로 같은 호 각 목의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상시근로자수 증가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「고용보험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.</u>
④ (생략) 제29조의2(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7제1항에 따	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 제29조의2(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인 피보험자에 대한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10제1항에서</u>

<u>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및</u> <u>같은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</u> <u>준용하는 같은 법 제15조에</u> <u>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</u> ③ ~ ⑤ (생 략)	<u>준용하는 같은 법 제15조에</u> <u>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(단,</u> <u>제56조의6제3항에 해당하는 직</u> <u>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적용</u> <u>한다.)</u>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373